

'좋은 인재를 채용하면서 지원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바램을 갖고 계신 벤처 CEO와 인사 담당자를 위해 <벤처다이제스트>에서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3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 직원복지시설 등 시설투자를 하면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직원들이 맘껏 일하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해도 쉽게 이직하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재정적인 한계 속에서 우수한 인재, 쾌적한 근무환경, 직원능력개발 등 세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기업장려금을 이용하면 채용과 함께 이런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시설투자를 통해 채용 등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자.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이라 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싶으나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처럼 근무 환경을 개선하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제도가 있나요?



**A**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중소기업이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50%까지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50%라고 해도 시설 개선에 대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3,000만원이지만, 시설 투자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근로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1인당 120만원(최대 30명)을 추가적으로 지급합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총 6천 6백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에는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이 포함됩니다.

둘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중에서도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시설 · 설비의 설치에 1천 만원 이상을 투자한 후 고용환경 개선

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수 증가는 순증가이므로 신규채용 외에 재고용 등으로 인한 근로자수 증가도 물론 해당됩니다.

셋째, 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클린사업장의 경우에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공단에서 이미 지원받았기 때문에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환경개선 이후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해서만 월 120만원씩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대상은 크게 작업환경개선설비와 복지시설로 구분됩니다. 일반 작업환경개선설비는 노동부 고시(제 2007 – 28 호)로 90개 품목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복지 시설의 경우, 일반 작업환경개선설비처럼 품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해당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 보수, 개조하는 경우에만 고용환경개선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구분	내 용
작업환경 개선설비	작업장, 통로, 승강기, 곤돌라, 연삭기, 주형조형기, 산업용로봇, 보일러, 선반, 압연기 · 압출기 등 90개 품목
복지시설	- 생활필수 시설 : 구내식당, 목욕시설, 의무실, 기숙사, 탁아시설, 세탁시설 - 문화 · 체육 · 편의 시설 : 도서실(컴퓨터 포함, 도서 제외), 체력단련실, 테니스장, 통근차량(16인승 이상의 중형승합 자동차), 사내 교육시설(교육 관련 장비 포함)

※구체적인 종류는 노동부 고시(제2007 – 28 호) 범위 참조



얼마 전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을 돋기 위해 통근버스를 구입했습니다.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일찍부터 알고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원 받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이용자격과 대상을 충족하더라도 특히 절차상의 준수사항들이 많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이용에 앞서 신청

과 승인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일부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장려금들과는 달리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1)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 제출→2) 계획승인→3) 고용환경개선 및 완료신고→4) 지원금 신청→5) 사실관계확인 후 지원금 지급' 등 모든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에서 지급까지 모든 절차는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완료 후에는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완료신고서를 그 완료일(사업주가 완료일로 신고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선작업 진행 중에 신고한 계획과 다른 내용의 작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을 변경하면 됩니다. 별도 일정이나 항목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변경하여 신고할 경우 변경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환경개선 작업을 완료하면 됩니다.

셋째,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시설·설비의 설치에 1천 만원 이상 투자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일지라도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1) 지원금 수급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나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2) 휴폐업중인 사업장, 3) 지원금 신청일부터 3개월 간 고용조정을 통해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장, 4) 환경개선 완료일부터 6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간 고용지원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장.

넷째, 근로자수가 증가했는지 여부는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달의 3개월 전 월평균 근로자수와 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달의 3개월 전 월평균 근로자수를 비교합니다. 해당 월의 월평균근로자수는 말일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 1) 고용보험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2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다.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3) 비상근속탁근로자
- 4)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 5) 월 임금을 6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직원복지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금을 받고 싶어도 보유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선뜻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설 설치 이전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나요?



아직 모든 시설에 대해 사전에 지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여성 근로자의 출산 후 근무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및 지원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 기업의 자금을 동원해 먼저 시설을 만든 뒤에 이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라면,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및 지원금'은 반대로 융자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뒤에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근무시설을 보육시설로 전환을 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및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금이므로 각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매입·임차하거나 운영중인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게는 연 1~2%로 5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금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보육시설로 전환하거나 운영중인 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아나 장애아 보육시설로 기능을 보강할 경우에도 소요비용을 2억 원까지 무상지원(유구비품은 5천 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 노동부의 '통합고용서비스 기관' 고용지원센터에 대해

고용지원센터는 취업 및 진로 지도, 직업능력 개발, 기업지원 사업 등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노동부 소속의 통합고용서비스 기관이다. 지난 1997년 IMF로 대량실업 사태가 벌어지자 실직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생겨났지만 2005년부터는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전략 과제로 설정하여 취업 및 재취업 지원, 실직자와 근로자 재교육,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기업 고용지원 등 계층·연령·대상 별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민간이 다루기 어려운 고용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지원센터는 전국 총 85개소가 있으며, 노동부 취업포털 사이트인 워크넷([www.work.go.kr](http://www.work.go.kr))과도 연계해 보다 더 효율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참고 사이트

고용지원센터 [www.work.go.kr](http://www.work.go.kr) 1588-1919  
노동부종합상담센터 [www.job.go.kr](http://www.job.go.kr) 1544-1350  
문의: 인컴브로더 조경운 부장 2016-7127 / 011-9070-7837  
윤지현 대리 2016-7130 / 016-746-7124  
장윤석 AE 2016-7143 / 010-2668-7717

본 페이지는 벤처 창업에 관련한 독자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궁금하신 점을 이메일 [okprmy@naver.com](mailto:okprmy@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